

8. 相續稅法中改正法律(案)立法豫告

財務部公告 第1993-51號, 1993. 9. 2

1. 개정취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강화로 상속·증여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제액과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증여 소지를 축소하며, 사전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증여세 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1)상속세 기초공제액을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함.

(2)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이 현재는 「6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인상함.

(3)증여세 배우자공제액이 현재는 「1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5백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천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인상함.

(4)증여세 직계존비속간 공제액이 현재는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3천만원으로 인상함.

나. 상속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현	행	개	정 (안)
○2천만원 이하 10%		○5천만원 이하 10%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0%		○5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 2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		○2억5천만원 초과 5억5천만원 이하 3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		○5억5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55%		○10억원 초과 50%	

다. 증여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현	행	개	정 (안)
○1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25%		○2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5%	
○9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2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4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5%	
○5억원 초과 60%		○5억원 초과 55%	

라.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 받은 다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는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면세범위를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로 축소함.

마.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법인설립허가자료, 재무검사결과등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업무협조장치를 마련함.

바. 상속·증여세 과세시 현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신분관계에 관계없이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은 동일하나, 앞으로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또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2세대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상속·증여세의 세액에 20%를 할증하여 과세하도록 함.

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이나 주식을 타인명의로 등기하거나 명의개서하는 경우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증여세과세대

상이 되는 조세회피의 범위는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는 물론 소득세·종합토지세등 다른 국세와 지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함.

아. 법인이 증자시 일부 주주의 실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함에 있어 현재는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만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함.

자.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로서 조세회피소지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30일간 공시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공시대상을 30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함.

차. 피상속인의 장례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현재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제출이 있는 경우는 증빙상의 비용을 전액 공제하며, 증빙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개산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산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

는 경우 현재는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반환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상속·증여 재산은 제대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평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현재는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속·증여재산을 제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파. 배우자·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종전에는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체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추정규정으로 전환하여 배우자·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에도 진정한 채무임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공제하도록 함.

하.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3년간에 걸쳐 연부연납할 수 있는바, 앞으로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할 것)를 재무부장관(참조: 재산세 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주소